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관련근거

- 「주택법」 제57조 제7항

■ 주택건설사업 개요

- 사업명 : 파주 운정 1,2지구 B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사업지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11
- 사업주체 : (주)하나자산신탁
- 시공사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 대지면적(㎡) : 25,876.00㎡
- 연면적(㎡) : 42,406.6284㎡
- 아파트 동수 : 11개동
- 지하층/지상층 : 지하 1층 / 지상 4층
- 세대수 : 186세대
- 입주자모집승인권자 : 파주시장
- 가산비 공시 주체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산비 공시

항 목		금액
택지 가산비	합계	9,920백만원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	4,140백만원
	암석지반 공사비	1,435백만원
	기간이자	2,661백만원
	그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287백만원
	재세공과금	1,397백만원
건축 가산비	합계	23,915백만원
	법정초과복리시설 가산비	376백만원
	특수형태주거 가산비	9,445백만원
	주택성능등급	1,549백만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648백만원
	인텔리전트설비 가산비	5,785백만원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948백만원
	사업승인조건	2,979백만원
	보증수수료	185백만원

※ (주의 문구)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